

# 생산물배상책임보험



피보험자가 제조, 판매,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, 법률(민사)상 손해배상책임(제조물책임)을 부담하는 경우,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.

## 주요 보상하는 손해

- 피보험자가 제조, 판매,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·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제 3자에 대한 대인·대물 손해
-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률(민사)상 손해배상금
- 소송 비용, 변호사 비용, 중재·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

##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

- 생산물이나 완료된 작업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-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- 결함 있는 생산물을 회수, 검사, 수리 또는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사용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
- 별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-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

## 주요 특별약관

- 도급업자 특별약관: 제품의 설치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
- 판매인 특별약관: 유통 과정상의 판매자를 추가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

## 가입대상

- 완성품 제조업체, OEM 업체
- 재료·부품 제조 및 공급업체
- 수입업체, 판매업체  
(백화점, 도·소매상인 등)
- 부품·완성품 조립업체
-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체 등

## 보험가입시 필요서류

- 가입 설문서 및 사업자등록증
-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
- (신규 업체의 경우, 예상 매출액)
- 제품 설명서(브로셔)

## 유의사항

약관은 사고담보기준으로 두가지로 구분

- **손해사고기준(Occurrence Basis)약관:**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사고라면 그 사고가 언제 발견되었는지 또는 그 사고에 대한 배상 청구가 언제 제기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그 사고가 발생된 일자에 유효한 보험증권상의 보험조건이 적용
- **배상청구기준(Claims-made Basis)약관:**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회사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담보 기준으로 하며,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되는 생산물 사고는 증권상에 명시된 소급 담보일자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함.

## 처브그룹 소개

처브그룹은 세계 보험업계를 선도하는 보험사입니다. 전세계 54개국에서 재물보험, 특종보험, 개인상해보험, 건강보험, 재보험 및 생명보험을 다양한 기업 및 개인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 언더라이팅 중심 기업인 처브그룹은 보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원칙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,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처리, 지급하고 있습니다. 풍부한 보험 전문지식과 장인정신으로

처브그룹은 개인, 가족,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최상의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또한 처브그룹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, 광범위한 판매 채널, 탁월한 재무 건전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. 처브그룹은 다국적 기업 및 중소기업 고객을 위한 재물보험, 특종 보험, 리스크 관리 서비스, 고액자산보유 고객을 위한 자산보호 목적의 보장성보험, 개인 고객을 위한 생명보험, 상해보험, 건강보험, 주택종합보험 및 특화보험 그리고 단체상해 보험, 단체생명보험 및 재보험 상품을 제공합니다.

미화 1,957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, 2022년 기준 미화 468억 달러의 총 수입 보험료를 달성한 처브그룹의 주요 보험 계열사들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의 기업재무 능력 AA 등급을, AM Best의 A++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처브그룹의 모기업인 처브리미티드(Chubb Limited)는 뉴욕증권거래소(NYSE: CB)에 상장되어 있으며, S&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

처브그룹은 취리히, 뉴욕, 런던, 파리 및 기타 주요 도시에 사업본부가 있으며, 전 세계 약 34,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.

## Contact Us

라이나손해보험  
(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),

처브그룹 컴퍼니

03156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

라이나타워 14, 15층

대표번호: +82 2 2127 2400

대표팩스: +82 2 6913 8498

[www.chubb.com/kr](http://www.chubb.com/kr)

라이나손해보험은 처브그룹 컴퍼니인  
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,  
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.

### 특종보험부

#### Casualty Division

O +82 2 6711 5791

E [casuality.kr@chubb.com](mailto:casuality.kr@chubb.com)

**Chubb. Insured.<sup>SM</sup>**

## 알아두실 사항

###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

#### 계약전 알릴 의무

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(질문서를 포함합니다)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.

#### 계약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
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 그러지 않을 경우,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#### [예시]

-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,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
- 기타 위험에 증가하는 경우(예: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,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,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)

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####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 사항을 반드시 확인
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, 보험기간, 보험료,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(약관)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청약의 철회

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, 동법 시행령 제37조,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(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)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

다만,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 철회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

#### [일반금융소비자]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합니다

[전문금융소비자]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,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, 구체적인 범위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## 계약의 취소

보험계약자는 청약시 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,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
- 계약취소신청주소: (031)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너타워 14, 15층

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
(전화: 02-217-2400)

- 기꺼운 영업점 위치: (031)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너타워 14, 15층  
(고객서비스센터)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

주식회사(전화: 02-217-2400)

####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

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 통지를 게을리하여 순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기한 순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

####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제한

##### 보험금의 지급

보험자는 지급보험금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손해를 통지 받고 보상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상황 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저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보상책임이 확정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간동안은 보험금 지급을 중지합니다.

-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음으로써 피보험자의 보상 청구권에 의문이 있는 경우
-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 또는 형법에 의한 짐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 중인 경우

##### 보험금의 지급 제한

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일반면책사항(이 일반면책은 증권의 전부분에 적용됩니다),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나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계약의 해제·해지에 관한 사항 (해지환급금 안내)

##### 계약의 해지사항

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-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
-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
- 계약자,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-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

##### 계약의 해제사항

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,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,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됩니다(상법 제650조제1항).

보험계약이 효력상실,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리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.

-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수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 보험료
-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수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빼

#### 잔액

#####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

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돌려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

#### 예금자보호 안내
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지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자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「5천만 원까지」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「5천만 원까지」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####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 안내

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시 고객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,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- 회사 전화번호: 1566-5800(고객서비스센터)
- 인터넷 주소: [www.chubb.com.kr](http://www.chubb.com.kr)
-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([www.fss.or.kr](http://www.fss.or.kr) / 국번 없이 1332) / 우) 150-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

####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

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, 보장내용(면책기간, 재작용 등)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#####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

계약자는 보험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적합성 원칙) 제3항, 제18조(적정성 원칙) 제2항, 제20조(설명의무) 제2항 및 제3항, 제20조(불공정영업행위금지) 제4항 또는 제21조(부당권유행위)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, 동법 제47조(위법계약의 해지)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 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,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탁여부를 통지(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)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다만,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지해지 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
**Chubb. Insured.<sup>SM</sup>**